

‘중대재해처벌법’ 3개 기관 전국 최초 공동 설명회

<안전보건공단 경기본부·고용부 평택지청 수원지청 평택지청>

시군로자 50인이상 사업주 대상 9명 참여 온오프라인 동시 개최
평·산업안전보건법과의 차이점
해 분석 등 사업주 궁금증 해소
해 예방 위한 시스템 안착 만전

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가 오는 일 중대재해처벌법의 본격적인 시행 앞두고 고용노동부 평택지청, 수원지청 평택지청 등 두 기관과 함께 치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.

13일 공단에 따르면 평택상공회의소 서 온오프라인 동시에 열린 이번 설명회는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의 업주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는 중대 재해처벌법에 대한 사업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열렸다.

설명회는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의 중 재해처벌법에 대한 해설을 시작으로, 지청장 평택지청의 사례 연구, 공단의 전보건관리체계 구축방안 등 세 분야

로 나눠 구성됐다.

노동부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해 설은 ▶제정 배경 및 목적 ▶산업안전보 건법과의 차이점 ▶법령의 주요 내용 순 으로 진행됐다. 검찰의 사례연구는 ▶법 개요 ▶이전 물류창고 화재사건, 기습기 살균제 사건 등 과거 사례들에 법 적용 이 이뤄질 시 변동 사항 등의 주제로 이 뒀졌다. 공단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을 ▶안전보건관리체계란 ▶체계 구축 방법 ▶체계 구축을 위한 7가지 핵심요 소 등으로 설명했다.

주최 기관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유가

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왔으며, 이번 설 명회에서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해, 입법 취지에 따라 재해예방을 위한 시스템 안착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. 이날 행사에는 고광재 안전보 건공단 경기지역본부장, 박윤석 수원지 청 평택지청장, 김덕근 고용노동부 평택 지청장 등의 기관 관계자들과 법 적용 대상 사업주 사업장 소속 안전관리자 등



중대재해처벌법 공동 설명회 관제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장(오른쪽 첫 번째)이 13일 평택상공회의소에서 김덕근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장(왼쪽에 서 두 번째), 박윤석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장(왼쪽에서 세 번째)과 함께 전국 최초 중대재해처벌법 공동 설명회를 개최하고 MOU를 체결했다.

사진=안전보건공단경기지역본부

“합리적 법 적용으로 산업재해 예방 기대”

박윤석 수원지청 평택지청장

경제해의 책임 소재를 가리는 중대재해 처벌법이 27일부터 시행되면서 기대와 격 의 목소리가 공존하고 있다. 이에 고용 노동부 평택지청,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 부, 그리고 수원지청 평택지청은 13일 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열었다. 설명회 공동 개최한 박윤석 수원지청 평택지청 장은 그의 집무실에서 만나 중대재해처벌 에 대해 물었다.



13일 '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'를 공동개최한 박 윤석 수원지청 평택지청장이 그의 집무실에서 중부일보와 인터뷰를 진행했다.

-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한 변화는.
사업주, 경영책임자, 공무원 및 법인 별 등을 규정함으로써 '중대재해 처벌법'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를 처벌하고,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을 대폭 강화했다. 이에 안전보건 화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 혹은 중 시민지해(▶특정 원료·제조물 결합 공중이용시설·공중교통수단 설계, 조, 설치 관리상 결함으로 발생한 재 조 일부)에 이르게 되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할 수 있다. 이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으로

중대재해라는 결과가 발생하면 사업주 와 경영책임자 등이 처벌되기에 안전 보건 조치 의무 위반 자체로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등 현장 책임자를 처벌하 는 규정이 있는 '산업안전보건법'과 구 별된다.

-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동시에 구 형량도 무거워졌는데.

법정형을 살펴보면 치사(사망에 이 르게 함)의 경우 징역 1년 이상, 벌금 10억 원 이하, 치상(상해에 이르게 함)은 징역 7년 이하, 벌금 1억 원 이하 로 규정됐다.

이는 그간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적용되던 형법의 업무상과실치사상 (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의 벌금)이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일 정 위반 행위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(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 금)에 비해 매우 중한 편이다. 향후 해당 법규의 적용 사례를 살펴봐야 하 지만, 이전의 산업재해로 인한 처벌 보다 구형량도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 상된다.

-산업계는 규정이 다소 모호하다고 우려하고 있는데.

중대재해처벌법은 '경영책임자등'을 '사업'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 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 여 안전·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'으로 규정하고 있다. 법에서 규정

평택지청장도 “법 시행이 재해를 감소 및 재해예방 노력의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”고 전했다.

고광재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 장은 “전국에서 처음으로 검찰, 고용노

한 '이에 준하여'는 해당 사업 또는 사 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조직·인력·예 산 등에 관해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 를 대신해 최종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 는 수준으로 봐야 한다.

또, 시행령에서 '상시 근로자 수 500 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 안전·보건 업무 관리 전담조직'을 규정하고 있지 만 그 구체적인 자격, 구성방법 등을 규 정하지 않았다. 그렇기에 안전·보건업 무 관리 전담조직은 사업장의 안전·보 건을 전담할 수 있는 총괄부서의 존재 여부나 그 전담조직의 구성원이 규모 에 비해 합리적인 인원인지 등을 고려 해야 한다고 본다.

-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 인해 검 찰이 바라보는 기대효과는.

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이 현장 안 전관리에 더욱 집중해 안전사고를 예 방하는 효과가 증대되면서 산업재해 또는 시민지해로 인한 사상자를 줄일 수 있길 바란다. 다만,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기대와 격정의 목소리가 병 존하고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다. 이 에 검찰은 엄정하면서도 합리적인 법 적용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기업과 지역사회가 상생할 수 있는 풍토가 확 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 다.

윤진현기자

정인노 농어촌공 경기본부장 취임 “KRC 농어촌 뉴딜로 사업 고도화”



한국농어촌공사 경 기지역본부는 제13 대 경기지역본부장에 정인노 전 감사실장 이 13일 취임했다고 밝혔다.

정인노 본부장은 1991년 한국농어촌공사에 입사해 본부 평택지사장, 여주·천지지사장, 본사 투자 사업처장, 경영지원처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.

정 본부장은 지타가 공인하는 경영전 문가이며, 공정한 업무처리와 화합과 신뢰의 조직문화를 중시하는 리더십으로 직원들로부터 신망을 받는 인물이다. 특 히, 여주이전, 평택 등 본부 주요 지사 지사장 역임으로 사업 추진을 위한 실무 능력을 겸비한 리더로 평가받고 있다.

정 본부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영상으로 진행된 취임식에서 “KRC 농어촌 뉴딜 전략을 통한 주요사 업 고도화와 지역특화 신성장 사업 확대 로 지속가능한 경영을 추진할 것”이라 며 “정령·안전을 위한 경영 혁신으로 농 어민과 함께, 농어촌을 위한 현장경영을 이끌어 가겠다”고 당부했다. 윤진현기자

인체피부모델을
이용한
동물 대체시험

•Sophistication ·Advance ·Reliance
화장품 / 건강기능식품 / 의약품 / 화장품원료

지외선, 여드름, 탈모 등